

당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함께 신청해보세요!

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

“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
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해
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합니다.”

●●● 지원요건 ●●●

- 이혼·비혼 등으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,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
-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(양육비부담조서, 판결문 등)이 있는 경우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생계급여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
-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
- 다음 ①에서 ⑥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
 -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거나, 질병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,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
 -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(외)조부모인 경우
 - 난방, 전기,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
 -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
 - 양육비 채권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

●●● 지원금액 ●●●

자녀 1인당 월 20만원

●●● 지원기간 ●●●

9개월(필요시 3개월 연장)

면접교섭서비스

- **면접교섭 중재**
면접교섭에 관한 중재·합의 지원
- **면접교섭 상담**
양육자·비양육자·자녀의 심리상담 및 면접교섭과 관련된 교육
- **면접교섭 모니터링**
지속적, 자발적 면접교섭을 위한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독려 지원
- **집단 면접 프로그램**
비양육자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(상담·교육·체험활동) 제공
※ 지역의 가족센터를 통해서 면접교섭서비스 제공

오시는 길



지하철 이용 시

- Chungmu-ro 3호선·4호선 5번 출구 도보 4분
- 명동역 4호선 10번 출구 도보 6분

버스 이용 시

- 퇴계로3가, 한옥마을, 한국의집 정류장 번호 (02151)
- 간선 104, 105, 140, 421, 463, 507, 604, N16(심야) 지선7011
- 퇴계로3가, 한옥마을, 한국의집 정류장 번호 (02152)
- 간선 104, 421, 463, 507, N16(심야) 순환01

 여성가족부
  한국건강가정진흥원
양육비이행관리원
1644-6621 서울시 중구 퇴계로173(중무로3가, 남산스퀘어) 24층
www.childsupport.or.kr



양육비이행관리원

Child Support Agency

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양육환경
조성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함께 합니다.



양육비이행관리원은?

-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설치되었습니다.
- 양육부·모(양육비 채권자)의 1회 신청만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를 종합 지원합니다.
- 양육부·모(양육비 채권자)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관련 상담, 협의성립, 양육비소송, 추심,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- 안정적,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위하여 주기적인 이행 여부 확인, 이행 독려 및 추가 법적조치를 상담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도 지원합니다.
-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자녀와 비양육부·모의 면접교섭을 지원하며 비양육부·모-자녀 관계개선,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양육비 관련 홍보·교육·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하여 '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을 위해 꼭 지급되어야 한다'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.



*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(‘21.6.10., ‘21.7.13. 시행)

서비스 신청 대상

-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자녀* 양육 한부모·조손가족
* 취학중인 만22세 미만 자녀,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 (만22세 미만 + 군 복무기간) 양육 한부모·조손가족
- ※ 이혼 한부모 뿐만 아니라 비혼 한부모도 지원
- 비혼모·부는 인지청구(자녀와 친부·모의 법률상 부모자 관계 형성) 부터 지원

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

- ① 온라인 홈페이지(www.childsupport.or.kr) 자료실 - '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' 서식 출력
 - ② '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' 및 관련서류 필수 제출 (등기우편, 방문)
- (우)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173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

양육비에 관한 상담 방법

- 전화/방문상담 ☎1644-6621(1번)
평일 09:00~18:00(주말, 공휴일 제외)
※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로 운영
- 온라인상담 www.childsupport.or.kr



※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